연구비 관련 운용규정

2018년 3월 12일 개정

이청기 연구비 운용규정

제 1 조 (목적) 본 규정은 故 이청기 선생님 유족의 뜻에 따라 고인의 연구 분야에 대한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연구비 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명칭) 본 연구비의 명칭은 '대한재활의학회 이청기 연구비'라고 한다.

제 3 조(연구비 재원 및 규모)
1. 본 연구비는 이청기 선생님의 유족이 학회에 기부한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며 원금의 이자 한도 내에서 집행한다.
2. 연구비는 매년 또는 매 2 년마다 선정하되 연간 연구비와 연구 건수는 연구기획위원회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제 4 조 (연구비 신청자격)
1. 대한재활의학회 정회원으로서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업적이 있는 자로 한다.
2. 연구기간 중 연구 책임자가 연간 6 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을 계획하고 있거나,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.
3. 대한재활의학회 주관 타 연구비를 수여 받아 연구 진행 중인 자나 동일한 연구 과제로 대한재활의학회 주관 타 연구비 신청에 응모한 경우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다.
4. 연구비 기수령자는 연구결과물 제출 후 2 년간 동 학술연구비 수상을 제한한다.

제 5 조 (연구 범위)
1. 연구 분야는 소아재활, 소아마비 그리고 전기진단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로 제한한다. 단 제출된 계획서 가운데 해당 분야가 없을 경우는 다른 연구 분야를 선정할 수 있다.
2. 연구기간은 1-2 년으로 한다.

제 6 조 (연구계획서 제출) 연구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1. 연구계획서 (별표 1)
2. 이력서 1 통
3.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

제 7 조 (연구과제 선정절차)
1. 연구과제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모한다.
2. 연구과제는 이청기연구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선정한다.
3. 선정된 연구과제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후 공고한다.
4. 연구비 선정기준은 이청기 연구비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 8 조(이청기연구비 심사위원회 구성)
1.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 명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연구기획위원장이 된다.
2. 심사위원회는 연구기획위원회 내 소위원회로서 위원은 연구기획위원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
3. 심사위원회는 공모 연구과제 선정 후 해촉된다.
4. 연구 과제 신청자 및 공동연구자는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.
5. 연구과제 신청자와 동일 기관 소속자의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점수합산 여부는 연구기획위원회 내규나 회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
제 9 조 (연구비 지급) 연구비는 학술대회에서 공고 후 선지급한다.

제 10 조(연구비 관리)
1. 모든 연구비는 연구 책임자가 관리한다.
2. 연구 책임자는 세부 항목별 계상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연구비 사용 내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.
3. 연구비 및 연구원 수당의 지출방식은 학회에서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.

제 11 조 (연구 책임자 의무)
1. 연구결과는 연구기간 종료 후 1 년 이내에 대한재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.
2.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대한재활의학회지 또는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야 하고, 본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. 게재된 논문의 교신저자는 책임연구자여야 한다.
3. 중복 사사는 원칙적으로 금하나 연구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도 있다
4. 연구기간 종료 후 2 년 이내에 연구결과물을 연구기획위원회에 제출한다.
5. 본 연구비로 수행한 연구결과는 "본 연구는 대한재활의학회 20OO년도 이청기 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"을 명기하여 발표하여야 하고, 영문 논문 발표 시 Acknowledge 표기법은 "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Chyung Ki Lee research grant of Korean Academy of Rehabilitation Medicine for 20OO"로 한다.

제 12 조(연구비 지급 중단 및 회수)
연구 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, 이 경우 연구기간이 지난 후라도 연구 책임자는 기지급한 연구비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.
연구비의 회수액은 연구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1.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2. 연구수행에 있어서 소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
3. 연구비를 지급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
4.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로 연구 보고를 한 때
5. 제 11 조의 연구 책임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
6. 연구 신청자격을 상실하였을 때

부칙 <2011 년 5 월 2 일>

1.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2. 본 규정은 대한재활의학회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